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법정화〉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6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법정화〉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5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 요	1
【이해식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이해식의원안】 (지방공무원법)	2
II.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개 요

【이해식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21.

다. 회부연월일 : 2025. 1.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이해식원안】(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21.

다. 회부연월일 : 2025. 1.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각 개정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을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국가공무원법-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지방공무원법-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생략) <신설> <신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또는 지정 이후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방법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① ----- ----- ----- ----- ----- ----- -----임용 또는 지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구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또는 지정 이후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u>

2. 검토의견¹⁾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 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행 법령상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나 소속장관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²⁾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조의3제2항 후단 및 제57조의3제4항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³⁾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

-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검토함.
- 2)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주요 내용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전일제공무원이 육아 등 사유로 주 15~35시간으로 일시 전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주 15~35시간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기동안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일반·전문임기제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르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하되,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대체인력자와 협의한 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제95조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하여금 상기 신청이 있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정한 변경시기에 따라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95조제4항).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해 종일 근무가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취지가 고려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근무 환경을 담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음.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삭제 <2017.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특히 지정기간 만료나 신청사유 소멸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등 전일제공무원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나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재직할 것을 예정하고 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비해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예정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공직자로서 신분의 발생 및 유지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근무시간의 축소에 따른 급여의 감소가 생계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도 중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현황>

(단위: 명, 매년말 기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직	신규채용자	172	152	430	379	559	124	38	5	6	1	통계작성중
	재직자	168	315	721	1,053	1,539	1,536	1,585	1,547	1,511	1,477	
지방직	신규채용자	277	747	952	938	498	-	-	-	-	-	-
	재직자	277	1,020	1,715	2,376	2,468	2,341	2,224	2,111	2,009	2,085	2,116

자료: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운영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현장에서 면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당한 근무시간 변경 등 부작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봄.⁴⁾

4)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에서는 기관의 인력운영상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용권자는 제출한 의견과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가 전일 근무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개인에게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공직임용 제도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 외에 수시로 변동하는 행정 수요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탄력적 인력운용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각 기관의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변경이 일절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임용권자 등의 임용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기관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지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신청 없이 또는 그 의사와 상관 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권 행사에 기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기관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등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적 대안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⁵⁾

5)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2024.6.27.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을 개정하면서 임용권자로 하여금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시간 총량의 변경은 제외하도록 하였음.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해질 경우 임용권자의 적시성 있는 인사 운영이 제한되어 국민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통상보다 짧게 근무하는 특성상 2인 1조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1인의 휴·복직에 따라 다른 1인의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⁶⁾ 이러한 상황에서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면 오히려 다른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신분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전일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변경 포함)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에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임용권자가 업무 특성 및 기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근무시간의 총량

6) (예) 갑의 휴직으로 을의 근무시간을 늘렸다가 갑의 복직으로 을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변경은 불가하도록 규정하여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유연근무 등)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만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불합리하고 상대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임의로 선택·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한 상황을 방지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의사에 의해서만 근무시간이 지정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임용권자의 임용 행위를 제한하고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 각급 기관의 사정에 맞는 절차를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